



전형 공통 Q&A

□ 학력, 성적 기준일

Q 학사학위 취득자도 지원 가능한가요?

A 학력기준(2학년 4학기 이상)을 충족하였으므로 성적기준(80점)만 충족하면 지원가능합니다.

Q 성적(80점) 기준일이 언제인가요?

A - 원서접수 기간 내 제출한 최종학기 성적으로 반영합니다.

- 단, 예외적으로 학력 예정자의 경우(2학년 4학기, 전문학사 졸업, 학점은행제 70학점) 지원 시 성적이 80점이 되지 않아도 학력 증명서와 직전학기까지의 성적증명서를 제출하면 지원은 가능하나, 추후 최종 학력·성적 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 학기 성적이 응시자격(80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불합격 또는 합격 취소 됩니다.

□ 학점은행제

Q 학점은행제 학사 기준 70학점은 언제 취득한 것까지 인정하나요?

A 2022년 10월 학점인정 신청 기간에 등록된 학점까지 인정됩니다.

따라서 원서접수 시 70학점이 되지 않고, 수업을 듣는 중이라면 현재까지 이수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급받은 학점인정증명서와 해당 교육원에서 수강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10월 학점인정 신청 기간에 70학점을 취득 예정이라는 것을 입증하면 지원자격을 인정합니다.

Q 학점은행제에서 학점으로 인정받는 자격증은 언제 취득한 것까지 인정하나요?

A 원서접수 마감일(2022. 9. 5.)까지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원서접수시 70학점이 되지 않고, 취득한 자격증을 학점으로 등록할 예정이라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급받은 학점인정증명서와 자격증 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10월 학점인정 신청 기간에 70학점을 취득 예정이라는 것을 입증하면 지원자격을 인정합니다.

Q 독학사 시험 결과발표 전인데도 학점 반영이 되나요?

A 원서접수 마감일(2022. 9. 5.)까지 합격 여부가 발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따라서 원서접수시 70학점이 되지 않고, 독학사 합격 학점을 등록 예정이라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급받은 학점인정증명서와 독학사 성적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10월 학점인정 신청 기간에 70학점을 취득 예정이라는 것을 입증하면 지원자격을 인정합니다.

Q 학점은행제에서 독학사, 자격증으로 학점을 일부 취득한 경우에 성적반영은 어떻게 되나요?

A 독학사 과정별 시험 합격 및 자격증의 경우 합격 여부만 확인하여 학점인정을 하므로 성적증명서에는 이에 대한 성적이 기재되지 않고, 학점으로만 인정하며 나머지 산출된 성적을 기준으로 80점 이상이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Q 학점은행제에서 독학사, 자격증만으로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A 독학사, 자격증만으로 학점을 취득하여 성적이 산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성적 요건(80점)에 관계없이 지원가능합니다.

Q 학점은행제 70학점은 전문학사도 해당하나요?

A 모집요강 응시자격의 세부 학력 기준과 같이 학점은행제 전문학사학위과정은 70학점이 아닌 전문학사학위 취득(예정)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 학교 생활, 임용 등

Q 편입생들은 행정학과와 법학과를 어떤 방법으로 선택하는지?

A 편입생 전형은 과 구분 없이 통합 선발합니다.
최종선발된 후 별도 대학 기준에 따라 학과가 정해지게 됩니다.

Q 학비, 기숙사비는 어떻게 되나요?

A 현재는 경찰대학생에게 학비, 기숙사비 등은 별도로 받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경찰대학 설치법」이 개정되면 일정 수준의 등록금 등을 납부하게 될 수 있습니다.

Q 학교 재학 중 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A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해 지급하며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0 '경찰공무원 등의 봉급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재직경찰관 전형 Q&A

□ 초임 호봉 산정 등

Q 기존 호봉을 어느 정도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공무원의 초임호봉은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및 별표15에 의해 확정합니다.

재임용 계급	현재 계급	호봉 산정
경위	높거나 같은 계급	임용계급의 경력으로 인정
	낮은 계급	임용계급까지 순차적 승진으로 계산

※ 초임호봉 확정은 위 규정 등을 준용하여 산정하나, 경력 등에 따라 개인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합격 후 소속기관 인사기능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경찰대학 재학 기간의 호봉은 어느 정도 인정되나요?

A 경찰공무원이 임용 전 「경찰대학설치법」에 따른 교육과정을 졸업한 경우 그 교육기간 50% 이내의 범위에서 인정(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6)합니다.
편입생의 경우 교육 기간이 2년이므로 1년의 호봉이 합산됩니다.

Q 경찰대학 졸업 후 경위로 신규임용시 초임 호봉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 경위 임용 전 「기존 호봉, 재학 기간 등」을 모두 고려하여 초임 호봉이 책정됩니다.

Q 경위 재임용 시 정근수당 근무연수에 이전 근무 기간이 포함되나요?

A 정근수당을 위한 근무연수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라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하므로 이전 근무기간도 포함됩니다.

Q 경찰대학 재학 기간은 정근수당 근무연수에 포함되나요?

A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7조 제1항 및 제4항에 의거, 정근수당의 근무연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경찰대학 재학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Q 임용 후 연가일수 산정시 기존 재직근무경력이 인정되나요?

A 공무원연금법 제2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재직기간”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산정되므로 기존 근무경력도 인정됩니다.

Q 퇴직 후 기 납부한 기여금은 어떻게 되나요?

A - 기 납부한 기여금은 의원면직 후 공무원연금공단에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재직기간을 합산 받으려는 사람은 공무원연금법 제26조에 따라 합산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고,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은 퇴직 당시에 받은 퇴직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공단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Q 수사표창만 인정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요?

A 재직경찰관 전형 신설 취지와 응시자의 객관적인 조직기여도 및 업무성과 반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사표창(장려장)만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수사와 정기의 구분이 어려울 경우 소속 경무 기능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학교 생활, 임용 등

Q 연금관련 기여금을 계속 내야하나요?

A 경찰대학생은 일반인 신분이므로 재학 기간 중 연금 관련 기여금을 납입하지 않습니다.

Q 경찰대학 재학기간 중 정근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퇴직 후 편입학하므로 경찰대학 재학 기간 중에는 정근수당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Q 재직시에 수사팀 2년과 지구대 1년 근무를 하였더라도 순환보직을 해야 하나요?

A 「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32조에 따라 경찰대학 졸업 경위는 필수현장보직 근무를 해야 합니다.

□ 영어 사전등록

Q 경찰청 특별시험의 경우 사전등록이 안 되는 것이 맞는지?

A 경찰청 특별시험은 정기시험이 아니므로 사전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원서접수 시 '경찰청 특별시험'에 체크한 후 2020. 1. 1. 이후 취득한 점수를 입력하고 해당 성적표를 첨부하면 됩니다.

□ 기준일

Q 재직기간 22. 12. 31. 기준 역산 3년의 기준은 언제부터인가요?

A 2020. 1. 1. 이후 임용자부터는 최소 실 근무연수 3년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Q 결격사유 기준일이 언제인가요?

A 원서접수 마감일(2022. 9. 5.) 기준 징계처분 종료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합니다.

구분	2021. 9. 4. 이전	2021. 9. 5. 이후
결격 사유	X	O

Q 치안성과평가 최근 3년이 언제인가요?

A 원서접수 마감일(2022. 9. 5.) 기준 최근 3년으로 2019년, 2020년, 2021년 개인 치안성과평가를 말합니다.

Q 인정되는 표창의 시점이 언제인가요?

A 원서접수 마감일(2022. 9. 5.) 기준 최근 3년간만 인정하므로 2019. 9. 6.부터 받은 표창, 장려장만 인정합니다.